의안번호	2214385
의 뢰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5.11.21.
추계번호	25D6243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 (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) 신설	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"라 함)를 작성하고, 제17조[1]에 따른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2 (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(안 제18조의2 신설)

○ 현재 「국가재정법」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작성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관계 법률이 부재함

1) 현행법 제17조(결산서의 첨부서류)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1. 계속비 결산 명세서
2.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
3.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
4. 성인지 결산서
5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(실적 기준)
6. ~ 12. (생 략)

○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회계법」 제17조에 따른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이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인력 증원 또는 평가를 위한 연구·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○ 다만,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,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·결산제 운영 관련 조례가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등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